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509723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강영태, 김태원

피고1.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변론 종결2019. 5. 9.

판결 선고2019. 6. 27.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20,978원 및 그 중 77,252,684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2017. 6.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7. 6.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7. 6. 23. 접수 제136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대출받았다.

2015. 6. 25.	85,000,000	2016. 6. 24.(2017. 6. 23. 연장, 2018. 6. 22. 최종 연장)	E대출	2015. 6. 26.	100,000,000
--------------	------------	---	-----	--------------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일부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7. 11. 24.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12. 27.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게 77,599,754원(= 원금 76,500,000원 + 이자 1,099,7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8. 3. 22. 위 대위변제금 중 347,070원을 회수함으로써, 그 잔존대위변제금은 77,252,684원(= 77,599,754원 - 347,070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95원(= 347,070원 × 10% × 1(2018. 3. 22. - 2018. 3. 22.) ÷ 365, 원 미만 버림)이며,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268,199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A, B의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7. 6. 23.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3. 접수 제28116호로 2017. 6. 21.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7. 6. 23.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3617호로 2017. 6. 21.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 B의 자력

피고 A,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20,978원(잔존대위변제금 77,252,684원 + 일부회수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95원 + 법적절차비용 1,268,199원) 및 그 중 77,252,684원에 대하여는 2018. 3.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구상금채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조건부·기한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7. 6. 21. 무렵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는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를 기초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2017. 12.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8. 3. 22. 원고가 농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가)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분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6. 2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처분하였으며, 그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 A으로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분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 효력밖에 없다 하여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 206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A과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고 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의 배우자인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경료한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A을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하고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처분하였으며, 그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 B으로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와 남편 F는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조미김 생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피고와 F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피고 C 측'이라 한다). 피고 C 측은 2009년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피고 A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피고 A과 매월 정산을 해오던 중 피고 C 측에서 피고 A에게 대하여 발생한 원초 관련 거래대금 채권이 누적되자 2017. 6. 중순경 피고 A에게 거래관계 중단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 A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변제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F로부터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자금지원을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는 피고 A이 자신의 사업체인 H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A과 피고 C에게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다 제1 내지 31, 33호증의 각 기재, 피고 A의 증언(변론분리)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피고 C 측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또는 원초 관련 대금채무가 약 10억 원을 초과하였고, F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6. 21. 피고 A에게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피고 A은 이를 할인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이후 2017. 10. 말경 피고 C 측과 피고 A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이 피고 C 측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90,000,000원(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을 합하여도 1억

6,000만 원이다)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F는 피고 A에게 추가로 자금지원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 피고 측과 피고 A의 거래가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피고 C 측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는, 피고 B이 남편인 피고 A을 위하여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피고 B의 사해성은 피고 A의 사해성에 종속되어야 하고, 피고 A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나머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이은빈

별지

1) 원고는 2019. 4.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즉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은 부동산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 2019가단202015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있다.